

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

노동기준법상 노동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준비나 뒷처리, 연수 등,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노동시간이 됩니다.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영세규모(10인미만)인 상업, 영화 연극업, 보건위생업,接客오락업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로서 1주 44시간입니다.

○휴식시간

사용자는 6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45분의 휴식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식시간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 업종이나 서면에 따른 협정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외에 잔업·할증임금, 휴일·휴가 등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중국어) 0570-001-702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베트남어) 079-224-8181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다국어 대응)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26-3733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